

| 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삼육MVP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2016.9.26, 2018.3.26>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 (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개정:2010.9.20, 2010.10.11, 2011.10.10, 2013.2.15, 2013.4.28, 2015.9.7, 2017.9.25, 2019.9.9, 2019.9.28>

제 2 장 입 학

제 4 조 (시기)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및 복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9.26., 2021.2.22>

제 6 조 (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서류심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으로 구분한다. 전형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 9 조 (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 ①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 ③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9.6.10>
- ④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⑤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 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 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6>

제10조 (등록금)

-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12.9.27>

제11조 (휴학)

-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6>
-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4.28>

- ④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28>
- ⑤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3.26>

제12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9.25>

-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 4.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5조 (징계) 학생이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16조 (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4.28, 2016.9.26>

-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 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제17조 (편입학)

-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3.17, 2015.9.7, 2018.3.26>
-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6>

제17조의 2 (학위과정 변경) [본조신설: 2016.9.26]

-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검토하여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변경이 불가하다.
 1. 정원의 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제18조 (재입학)

-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제 4 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제19조 (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제20조 (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제21조 (교육과정)

-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8>
-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6.10, 2021.2.22.>

제21조의 2 (수업) [본조신설: 2019.6.10]

-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요일수업,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제23조 (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 학기 등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4조 (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제25조 삭제<2018.3.26>

제26조 (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제26조 2 (휴·보강)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6]

제27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2018.3.26, 2018.10.8>

제28조 (수료학점) [개정: 2016.9.26]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8.3.26>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29조 (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3.26>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30조 (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F	0.0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 B+(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 (학점교류)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33조 (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시행은 외국어시험 규정과 종합시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시험일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35조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6조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학위 논문

제37조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2.22>

제38조 (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

제39조 (논문제출 시한) <개정: 2015.9.7, 2016.9.26>

-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 ②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5.4, 2016.9.26, 2021.2.22>

-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7>

제40조 (심사위원 및 위원장)

-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41조 삭제<2021.2.22>

제 7 장 학위 수여

제42조 (학위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과 학과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43조 (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개정: 2010.9.20, 2010.10.11, 2011.10.10, 2013.2.15, 2013.4.28, 2015.9.7, 2017.9.25, 2019.9.9, 2019.9.28>

제44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 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8 장 명예박사학위

제45조 (자격) 우리나라의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과 더불어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 (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7조 (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 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제48조 (연구과정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의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지원서류에 관하여는 입학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6>

제49조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개정: 2018.3.26>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제50조 (연구과정생의 등록) 연구과정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7, 2018.3.26>

제52조 (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12.17>

제53조 (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4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10장 학생 활동 및 장학 제도

- 제55조 (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 (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56조 (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은 대학원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한다.
- 제57조 (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4.28>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정규등록자
 3. 직전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제58조 (외국인 장학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8>
- 제59조 (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은 면제되며 등록금의 1/2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정 장학금에 관하여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0조 (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3.26>
-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18.3.26, 2021.2.22>

제61조 삭제<2018.3.26>

제62조 (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63조 (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3.26>

제64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65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 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8>

제66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기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8>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7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대학(원) 학과,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다.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라.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조신설: 2018.3.26.]

제68조 (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 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9조 (박사과정위원회의 기능)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에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70조 삭제<2021.2.22>

제71조 (교육과정위원회) [본조신설: 2018.3.26]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 학과장(7), 교학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72조 (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 각 학과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3.26.]

제72조의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대학원의 입시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위원장 1명, 평교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1.2.22.]

제72조의 3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기능)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2.22.]

제72조의 4 (학술상심사위원회)

① 대학원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2.22.]

제72조의 5 (학술상심사위원회의 기능)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술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1.2.22.]

제12장 학칙 및 준용 규정

제73조 (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5조 (학칙공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제76조 (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77조 (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장 학위검증위원회

제78조 (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0>

제79조 (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0>

부 칙

1. 본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과규정으로서, 본 학칙 개정 당시 재학생은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16.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16일부로 시행한다.
18.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보건바이오융합학과’ 학생은 ‘중독과학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 ③ 보건복지대학원이 임상간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대학원 소속 임상전문간호학과 재학생 및 수료생들은 임상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보건복지대학원 소속 보건학과 재학생들은 기존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로 학적을 유지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9조 ⑥항은 2019학번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8조(수료학점)는 개정 당시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표 1. 【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명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2020	2019	2018	2017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유아교육학과, 글로벌문화융합콘텐츠학과	115	105	105	94
		자연과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약학과, 융합과학과, 중독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음악학과, 통합예술학과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경영학과는 통합과정 운영 없음)	40	40	40	40
		자연과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학과, 약학과, 융합과학과, 중독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예능	음악학과, 통합예술학과				
		소 계		155	145	145	134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	신학과	30	40	40	51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경영학과	10	10	10	10
임상간호대학원	석사	자연과학	임상전문간호학과	17	17	17	17
총 계				212	212	212	212

별표 2. 【학위종별】

대학원명	과정	계열	학과	수여학위명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유아교육학과 글로벌문화융합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석사(M.S.W.) 심리학석사(M.A.) 신학석사(M.A., M.Th.) 문학석사(M.A.) 문화학석사(M.A.)
		자연과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약학과 융합과학과 중독과학과 환경원예학과	간호학석사(M.S.N.) 이학석사(M.S.) 보건학석사(M.S.) 이학석사(M.S.) 약학석사(M.S.) 이학석사(M.S.) 보건학석사(M.S.) 이학석사(M.S.)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음악학과 통합예술학과	이학석사(M.S.) 음악학석사(M.M.) 예술학석사(M.A.)
	박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사회복지학박사(Ph.D.) 심리학박사(Ph.D.) 신학박사(Ph.D.)
		자연과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학과 약학과 융합과학과 중독과학과 환경원예학과	간호학박사(Ph.D.) 이학박사(Ph.D.) 이학박사(Ph.D.) 약학박사(Ph.D.) 이학박사(Ph.D.) 보건학박사(Ph.D.) 이학박사(Ph.D.)
		예능	음악학과 통합예술학과	음악학박사(Ph.D.) 예술학박사(Ph.D.)
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M.Div.), 선교리더십석사(M.M.L.)
경영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석사(M.B.A.)
임상간호대학원	석사	자연과학	임상전문간호학과	간호학석사(M.S.N.)

(석) 제○○○호

학 위 기

성 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
로 이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논문제목)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 ○ ○ ○ ㉡

삼육대학교 총장 ○ ○ ○ ㉡

교육부 학위등록 번호:

삼육대 20○○(석)○○○호

(박) 제○○○호

학 위 기

성 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박사 학위
논문이 대학원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학 박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논문제목)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 ○ ○ ○ ⑈

삼육대학교 총장 ○ ○ ○ ⑈

교육부 학위등록 번호:

삼육대 20○○(박)○○○호

(석) 제○○○호

학 위 기

성 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에서 석
사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
로 이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논문제목)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장 ○ ○ ○ 印

삼육대학교 총장 ○ ○ ○ 印

교육부 학위등록 번호:
삼육대 20○○(석)○○○호

(석) 제○○○호

학 위 기

성 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경영학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였
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논문제목)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 ○ ㉡

삼육대학교 총장 ○ ○ ○ ㉡

교육부 학위등록 번호:

삼육대 20○○(석)○○○호

(석) 제○○○호

학 위 기

성 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
호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학석사의 자격
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논문제목)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장 ○ ○ ○ ㉠

삼육대학교 총장 ○ ○ ○ ㉠

교육부 학위등록 번호:
삼육대 20○○(석)○○○호

명박 제○○○호

학 위 기

성 명 ○ ○ ○
20○○년 ○월 ○일생

이 분은 평생을 사회의 복지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
에 지대한 공헌 을 하였으므로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함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 ○○ 박사 ○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 ○○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박사 ○ ○ ○ ㉡

교육부 학위등록 번호:
삼육대 20○○(박)○○○호

대학원 제○○○호

재학사실증명서

성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생으로
1년간 재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재학 기간: 20○○년 ○월 ~ 20○○년 ○월 (1년간)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 ○○ 박사 ○ ○ ○ 印

신학대학원 제○○○호

재학사실증명서

성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연구과정생
으로 1년간 재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재학 기간: 20○○년 ○월 ~ 20○○년 ○월 (1년간)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장 ○○ 박사 ○ ○ ○ 印

경영대학원 제○○○호

재학사실증명서

성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연구과정
생으로 1년간 재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재학 기간: 20○○년 ○월 ~ 20○○년 ○월 (1년간)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박사 ○ ○ ○ ⑨

임상간호대학원 제○○○호

재학사실증명서

성명 ○ ○ ○

20○○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에서 연구과
정생으로 1년간 재학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재학 기간: 20○○년 ○월 ~ 20○○년 ○월 (1년간)

20○○년 ○월 ○일

삼육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장 ○○ 박사 ○ ○ ○ ㉠

제 4 장

Detailed Regulations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학술상, 우수논문,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 ①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 3 조 (모집 회수 및 시기)

- ①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
-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지원자격)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2.22>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9.26, 2018.3.26>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3. 연구과정생: 석사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제 5 조 (지원절차)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제 6 조 (전형)

- ① 석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개정: 2015.12.14>
- ②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서류심사(100점), 구술고사(100점), 필답고사로 한다.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6.9.26>
 - ㉠ 삭제<2019.6.10>
 - ㉡ 물리치료학과: 전공 필답고사(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 ③ 연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 7 조 (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9.26, 2018.3.26>
 -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다. 대학 성적증명서
 - 라. 소속학과 교수의 추천서(통합과정에 해당됨)
 - 마. 자기소개서
 - 바. 학업계획서
 - 사.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2. 박사과정 <개정: 2021.2.22>
 -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 나.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 다. 대학원 성적증명서
 - 라. 자기소개서
 - 마. 학업계획서
 - 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 사.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3. 연구과정
 -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제 8 조 (선수과목의 이수 및 입학조건)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학부의 전공 분야와 상이할 때에는 해당학과의 진학의견서를 받고, 입학 후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 삭제<2019.6.10>

제10조 (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전공과 구술고사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목낙제가 없어야 한다.
- ② 삭제<2019.6.10>
- ③ 전공시험의 과목낙제는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 이상이 40점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6>

- ⑤ 삭제<2019.6.10>

제11조 (출제위원)

-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② 구술고사 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제12조 (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3.26.>

제13조 (입학등록)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제 3 장 등 록

제14조 (석·박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 ④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6>

제14조의2 (등록금의 반환) [본조신설: 2009.4.16]

-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개정: 2013.4.28>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8>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의3 (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개정: 2018.3.26>

제15조 (석·박사과정 연구등록)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5.26, 2013.11.15>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 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6조 (외국인 학생 등록)

-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 ③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 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학점 취득) 정규학기 수강신청은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4.28>

제18조 (수강신청)

-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④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4.0)로 한다.
<개정: 2021.2.22>
-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9조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 ① 외국인 학생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를 둔다. <개정: 2019.6.10>
-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18.3.26>

제 4 장 교육과정

제20조 (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9.26>

제21조 (공동강의) 학과 내 전공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나 학과 간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은 공동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 (수료학점)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 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4조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2013.4.28, 2018.3.26>

- 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

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들이 수강할 수 없다.
- ③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
- 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는 졸업학기 단축 없이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10>

제25조 (채플) 채플은 대학원 공통과목 1과목 수강으로 대체한다.

제25조의2 (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9]

1.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3.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 5 장 외국어 시험

제26조 (응시자격)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영어, 제2외국어, 박사과정의 성서원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9.26>

제27조 (응시절차)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28조 (시험일자)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 <개정: 2016.9.26>

2. 박사과정

가. 영어

나. 삭제<2016.9.26>

다. 헬라어(신학과)

라.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3. 외국인 학생: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제30조 (시험과목의 면제)

① TOEFL 550점(IBT 80점), TOEIC 800점, TEPS 55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 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9., 2016.6.20, 2017.3.13, 2019.6.10>

② 석사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학위과정변경을 통해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통합과정에서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9.26>

③ 이중언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600시간의 한국어과정에 수강중이거나 600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9.6.10>

제31조 (출제위원) 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 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제32조 (출제범위)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2016.9.26>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에서의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신학과 박사과정의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 이수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 (합격인준)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35조 (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해당학기에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제 6 장 종합시험

제36조 (응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개정: 2016.9.26., 2018.3.26, 2021.2.22>
 - 가.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 가.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제37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38조 (시험일자) 모든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정한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6.9.26>
- 제39조 (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40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제41조 (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42조 (합격인준)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 제43조 (재시험)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제 7 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제44조 (논문지도교수 위촉)

- ①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인 교수가 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45조 (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 ① 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2인,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개정: 2016.9.26>

③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개정: 2021.2.22>

① 삭제<2021.2.22.>

②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 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 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6.>

②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심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1.2.22>

③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심사용 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할 때도 논문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2>

제48조 (논문 예비발표) <개정: 2021.2.22>

①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한 학기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2021.2.22>

② 삭제<2021.2.22>

③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는 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9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개정: 2018.3.26>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삭제<2021.1.4>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9.26, 2018.3.26, 2021.2.22>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학위논문 예비발표를 마친 자

제50조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본조의 2~4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②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 자격 재 부여기간은 1회 당 1년,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9.7>

제51조 (심사용 학위논문)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부, 박사과정에서는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tract)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3조 삭제<2021.2.22>

제54조 (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심사위원장 및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09.23, 2021.2.22>

제55조 (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제56조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57조 (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중 1회는 공개발표로 시행해야 하며 공개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제58조 (논문심사기간)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9조 (논문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는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2>

제60조 (심사 및 지도)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절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제61조 (논문심사연기)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모두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논문심사 판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63조 (논문 재심사) 논문의 제출은 총 3회에 한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 (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5, 2019.6.10>

1. 석사 및 박사: 4부(신학과 5부)

2. 온라인 학위 논문 업로드

제65조 (학위수여) 학위는 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규정을 이수한 자

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8.3.26>

제66조 (학위수여의 회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회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제67조 (학위기)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21.2.22>

제 8 장 대학원 학술상

제68조 (목적) 대학원 과정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문 풍토를 조성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 2021.2.22>

제69조 (심사대상) 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심사대상 논문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제1저자로 발표된 논문이어야 하며, 소속은 삼육대학교 혹은 삼육대학교 소재 연구소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연구조교 실적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2.22>

제70조 (선정) 선정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6, 2021.2.22>

제71조 (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12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6, 2021.2.22>

제72조 (학술상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평교수 5인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2.2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⑥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7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 (인준) 대학원장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대해 대학원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통지 및 발표) 심사결과 선정여부에 관한 사실을 논문을 제출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 (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개정: 2018.3.26>

제78조 (시상)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월 중에 한다. <개정: 2018.3.26>

제79조 (규정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장 6조(전형)의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